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5년 08월 29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 유상증자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0,600,000주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등
4. 1주당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1) 1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times (1 - 할인율)] / [1 + (증자비율 \times 할인율)]$

- (2) 2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times (1 - 할인율)$

-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 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text{Max}[\text{Min}[1\text{차 발행가액}, 2\text{차 발행가액}], \text{기준주가의 }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5년 09월 17일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5년 09월 18일 ~ 09월 22일
7. 신주의 배정방법

-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699341532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 (2)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 (20%)
- (3)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한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

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的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잔액인수계약서상 인수비율에 따라 인수한다.
- (iv)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 (1) 구주주의 청약기간(예정) : 2025년 11월 03일 ~ 2025년 11월 04일(2일간)
- (2) 일반공모 청약기간(예정) : 2025년 11월 06일 ~ 2025년 11월 07일(2일간)

10. 주금납입일 : 2025년 11월 11일

11.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구로디지털중앙지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13. 신주 상장예정일 : 2025년 11월 24일

14. 대표주관회사 : SK증권 주식회사

15. 인수회사 : LS증권 주식회사, 한양증권 주식회사 및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16. 청약사무취급처

-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준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준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 지점

17.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5년 10월 17일 ~ 2025년 10월 23일 (5영업일)
- (2)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SK증권 주식회사

18. 기타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
-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5) 상기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타 및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무상증자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40,045,024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기준)
2. 신주의 발행가액 : 500원
3.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5년 11월 13일
4. 신주의 배정방법 : 상기 3. 신주의 배정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제1호 의안의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8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함.(단, 배정결과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함.)
5. 신주 배정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6. 신주 배당 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7. 신주 유통 개시예정일 : 2025년 12월 03일
8. 신주 상장 예정일 : 2025년 12월 03일
9. 기타 사항 : 상기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타 및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유상 및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유상증자 신주배정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5년 09월 17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5년 09월 18일 ~ 09월 22일

■ 무상증자 신주배정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5년 11월 13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5년 11월 14일 ~ 11월 18일

2025년 08월 29일

에이비온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영 기